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
------------	-----

발의연월일 : 2016. 6. 15.

발의자 : 주승용 · 변재일 · 김경진

민홍철 · 이용호 · 박준영

노웅래 · 최도자 · 이용주

박주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 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중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示達)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를 “감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①</p> <p>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示達)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p>	<p>제8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① -</p> <p>-----</p> <p>-----</p> <p>---<u>감독한다.</u>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 ⑧ (생 략)</p>	<p>② ~ ⑧ (현행과 같음)</p>